11.3. 환율(현지화 사용 무역관)

11.3.1 용어설명

11.3.1.1 송금통화 확정값

11.3.1.1.1 현지화로 집행한 금액을 분기 마감 전에 미리 송금통화로 확정한 금액.

11.3.1.1.2. 규정 또는 지침상 송금통화 정액으로 산출단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건(급식보조비, 출장비,해외근무수당 등)을 현지화로 지급하는 경우 직전 입금환율 적용하여 송금통화 확정값 입력해야 함.

11.3.1.1.3. 사업 종료로 더 이상 집행이 필요 없어 정산 금액을 미리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 평균환율을 적용(입금환율이 아닌)하여 송금통화 확정값을 일괄 입력 할수 있음

11.3.1.1.4. 다만, 송금통화 확정값을 입력할때 직전 입금환율을 미적용(=대신 평균환율 적용)을 과도하게 하면, 환율 차이가 커질뿐만 아니라 환율 오류 발생을 야기하니 반드시 **필요할 때만 사용** (ex. 사절단 등 별도 정산 사업의 분기전 금액 확정 필요 등)

11.3.2. 환율 차이: 자금잔액명세서 상 차이 ±0.05 이하 인것을 확인 후 장부 확정 해야 함

* 환율 차이 과도할 시 장부 확정 처리 불가하니 유의 요망

• ERP 환율 차이 확인 방법

O 가. 회계장부와 전도자금출납명세서 잔액 비교표

ۂ}}	장부명	통화	금액	송금통화	송금통화금액
1	송금통화예금	USD	46,719.430	USD	46,719.43
2	현지화예금	ARS	1,877,624.600	USD	2,306.75
3	신용카드	ARS	-579,047.460	USD	-711.39
4	예금합계		0.000	USD	48,314.79
5	송금통화현금	USD	10.190	USD	10.19
6	현지화현금	ARS	12,659.440	USD	15.55
7	현금합계		0.000	USD	25.74
8	회계장부잔액		0.000	USD	48,340.53
9	전도자금출납명세		0.000	USD	48,340.55
10	환율차이		0.000	USD	-0.02

환율차이 ±0.05 초과 시 아래 이유가 원인이므로 확인

- ① 평균환율 저장 여부 확인
- ② 송금통화 확정값 상 직전 입금환율 입력여부 확인
- ③ 거래유형 대체 필터 걸어 입력값 재확인